Department of Education

보건 서비스 조항 및/또는 섹션 504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편의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
2013-2014

모든 학부모, 주치의, 보건케어 제공자에게:

뉴욕시 교육청 및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의 학교보건 담당실은 모든 특수필요 학생이 교육환경에 완전한 참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학부모 및 제공처는 반드시 직접 보건 서비스 및/또는 1973년 제정된 재활법 섹션 504 편의를 요청하려면 동봉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. **양식은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.** 학생이 학교에 요청한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매 학년도마다 새로운 요청 및 승인 양식이 요구됩니다. 작성한 양식 검토 및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양식을 작성하는 주치의/보건 케어 제공자는 서비스가 요청된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- 반드시 유효한 뉴욕주, 뉴저지 또는 커네티컷 면허, Medicaid 및 NPI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. 만약 면허 번호가 없는 수련의가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감독(예: 담당의사)의 서명 및 면허 번호가 요구됩니다.
- 양호교사가 완전히 이해하고 의료적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돍 오더는 상세하고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.
- 학교 수업시간 중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만을 요청하십시오 (예: 등교 전 또는 하교 후 가정에서 투약할 수 있는 경우 학교에 요청하지 마십시오).
- 동종요법 약품은 투약하지 않습니다.
- 약품은 학생이 학교에서 약품을 지참하도록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방(예: 양호실)의 잠겨진 캐비넷에 보관됩니다.
- 학부모, 주치의, 교직원 및 학생은 반드시 각 아동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. 아동이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경우 학부모님은 투약 양식의 뒷면 해당 란에 이니셜을 기입하셔야 합니다.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약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(예: 자신의 약이 맞는지, 무엇을 위한 약인지, 정량이 투약되는지, 학교 수업 중 언제 약이 필요한지, 투약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인지해야 합니다.) 자신의 약에 대해 이해하는 학생은 학교 수업 중 반드시 필요한 약의 경우 소지하고 감독 없이 스스로 투약할 수 있도록 승인받습니다; 그러나, **관리 대상 약품은 절대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.**

학부모님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약물 투여 양식 (MAF) 상단 왼쪽에 자녀의 최신 사진을 부착하십시오.

네 가지 종류의 요청 및 승인 양식이 있습니다:

- 약물 투여 양식 (MAF) - 학생의 약물 투여 요청과 관련해서만 작성하십시오. 천식의 경우 제공자는 천식 대처 계획을 MAF에 첨부하십시오. 학교 견학 중 네뷸라이저 사용은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능한 경우 인헤일러 및 스페이서 처방을 고려하십시오.
- 처방된 의료 치료 제공 (비약물) - 도뇨관, 체위배액, 기관흡입, 위루관 사용 등 특수 조치 요청 시 작성하십시오. 본 양식은 모든 전문 간호 조치 요청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당뇨 약품 투여 양식: 다음을 필요로 하는 당뇨 학생에 대해 작성하십시오. 글루코스 모니터, 인슐린 및/또는 글루카곤 투여
- 섹션 504 편의 요청 - 장애물이 없는 건물, 엘리베이터 사용, 시험 조정 등을 요청할때 사용하십시오. 본 양식을 직업치료, 물리치료, 스피치 및 언어치료, 카운슬링 등 학생의 개별교육 프로그램(IEP)에 명시되어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에는 사용할 수 **없습니다**.

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녀분의 학교로 연락하십시오.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.